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281
----------	------

제안연월일 : 2016. 6. 20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우미경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140번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이승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24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경관조명의 점등 및 소등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 상위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을 조정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장식조명을 국내외 행사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점등과 소등시간을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제1항),
- 나. 상위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을 조정하며(별표),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제1항 등).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할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관할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명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하고, “해외”를 “국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매 회의마다”를 “회의마다”로 하고, 제19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증설하고자 하는”을 “증설하려는”으로 하고, “제12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여,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제12조에 따른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

드라인”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중 “국내외 행사, 빛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은”을 “국내외 행사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제22조제2항 관련)

구 분	시 설 규 모
1.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5.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u>관할 지역</u>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u>강구</u>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 ----- <u>관할지역</u>----- ----- ----- ----- ----- <u>마련</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u>관할 지역</u>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① ----- ----- ----- <u>관할지역</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u>당해</u>위원을 <u>해촉</u>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4조(위원의 <u>위촉 해제</u>) ----- ----- ----- <u>해당</u>----- ----- <u>위촉 해제</u> ----- ----- -----.</p>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생략)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 ① (생략)
-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③·④ (생략)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별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치료가 필요한
-----국외-----
2. ----- 위촉 해제를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회의마다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 -----
-----대해서는 ----- 별
위에서 -----

제22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①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12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조명계획 중 별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23조(좋은빛 형성 관리 등) ①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좋은빛 형성을 위하여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12조에 따른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점등 및 소등 운영)

제22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①

----- 증설하려는 -----
-----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
-----.

② -----
----- 대해서는 -----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좋은빛 형성 관리 등)

-----하
려는 -----
----- 제21조에 따
른 야간경관가이드라인-----
-----.

제24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② (생략)

③ 건축물, 교량, 구조물 등의 경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장식조명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 이내로 하며,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영상 연출시간은 시간당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와 국내외 행사, 빛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생략)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제13조제2항 관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내외 행사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제22조제2항 관련)

구 분	시 설 규 모
1. 건축물	<u>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공공청사</u>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 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도로부속 시설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5. 주유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6.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 중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작품,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대상
7.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구 분	시 설 규 모
1. 건축물	공공청사
	<u>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u>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 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5. ~ 6. 삭제	
5.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